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무부에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6명 중 168명은 증원하고, 8명은 법무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무부 인력의 증원(안 별표 6)

법무부에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중대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신설과 인력의 증원 등(안 제54조,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

- 1) 종전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를 폐지하는 대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 2)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법무부에서 지방교정청으로 이체하고,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며, 남양주보호관찰지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함.

3) 지방교정청등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대체복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6명, 7급 10명, 8급 14명)과 가석방 심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함.

4) 치료감호소에 운영인력 부족으로 미운영중인 병동의 추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1명, 7급 2명, 8급 5명, 9급 5명)을 증원함.

5) 소년원에 광주솔로몬로파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보호소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각각 증원함.

6)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7)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체류외국인의 민원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1명”을 “232명”으로 한다.

별표 1 서울지방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의 위치란 중 “여주군 가남면”을 “여주시 가남읍”으로 한다.

별표 5 중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란 다음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	---------

별표 6 중 총계 “763”을 “758”로 하고, 일반직 계 “732”를 “7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22”를 “717”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598”을 “22,774”로 하고, 일반직 계 “22,584”를 “22,76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379”를 “22,555”로 한다.

별표 8 제2호 중 “평가대상 정원”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종전의 평가대상 정원)에 16) 및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서울지방교정청 1개 과	-	2024년 9월 30일까지

1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88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7) 보호외국인의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231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u>232명</u>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63</u>	<u>758</u>	-5
·	·	·	
·	·	·	
일반직 계	<u>732</u>	<u>727</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u>722</u>	<u>717</u>	-5
·	·	·	
·	·	·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598</u>	<u>22,774</u>	+176
일반직 계	<u>22,584</u>	<u>22,760</u>	+17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379</u>	<u>22,555</u>	+176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